

행 정 자 치 부

훈계·시정 요구

제 목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부적정

기 관 명 기장군

관 련 자 기장군 ○○○○국 ○○○○○과(전 ○○○○○○○과) 지방○○○○ ○○○

내 용

지방○○○○ ○○○는 2015. 10. 5.부터 2017. 4. 2.까지 ○○○○국 ○○○○○○○과(구 ○○○과)에 근무하면서 2015. 11. 26. (주)○○○○이 신청한 ○○○○○○○클럽(구 ○○○○○○○클럽) 내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2015. 12. 17.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관리번호 2015-0)를 교부하는 업무의 실무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재협의를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장등은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와 그 밖에 협의 내용을 변경 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같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사전공사의 금지 등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 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부산광역시 ○○○○실 ○○○○과는 기장군 ○○읍 ○○리 산0번지 일원에 (주)○○○○이 신청한 면적 1,527천㎡(27홀 회원제골프장)의 ○○○○○○클럽(구 ○○○○○○클럽) 개발사업 승인을 위하여 2000. 11. 9. ○○○○○○○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2001. 8. 1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고, (주)○○○○은 2001. 12. 22. 착공하여 2005. 9. 6. 골프장 시설공사가 완료되어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을 조건부로 등록승인 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2016. 6. 28. 도시계획시설사업(○○○○○○○클럽조성사업)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정부합동감사 시 위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2000. 11. 9. ○○○○○○○청과 협의한 환경영향평가서 322쪽 및 339쪽에 따르면 본 사업지구 운영 시 생활용수(300㎥/일)는 사업지구 내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관개용수(1,800㎥/일)는 지하수(700㎥/일) 및 우수저류수(1,100㎥/일)를 활용할 계획으로 생활용수와 관개용수로 지하수 1,000㎥/일을 개발하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인가받았다.

기장군 ○○○○국 ○○○○○○과(2015. 8. 3이전 건설과)는 ○○읍 ○○리 산00-0번지(관리번호 2008-0)에 1일 500㎥, ○○리 산0-0번지(관리번호 2008-0)에 1일 450㎥ 등 총 2개 관정에서 950㎥/일을 2008. 5. 26.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준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하였으나, 2010. 3. 15. ○○읍 ○○리 산00-0번지(관리번호 2010-0)에 1일 400㎥, 2015. 12. 17. ○○리 산0-0번지

(관리번호 2015-0)에 1일 600m³ 등 총 2개 관정에서 1일 1,000m³의 지하수 개발·이용을 추가로 허가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기준인 1일 최대취수량 1,000 m³에 950m³을 초과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하였다.

또한 (주)○○○○(○○○○○○클럽)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받은 ○○리 산00-0번지(관리번호 2010-0)와 ○○리 산 0-0번지(관리번호 2015-0)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2,459m³을 취수하였다.

【표 1】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허가 현황

위치 (관리번호)	○○리 산00-0 0호공 (2008-0)	○○리 산2-1 0호공 (2008-0)	○○리 산00-0 0호공 (2010-0)	○○리 산0-0 0호공 (2015-0)	감사시 지적
취수계획량 (m³/일)	500	450	400 (350m³ 초과허가)	600 (950m³ 초과허가)	관리번호 2010-0, 2015-0 950m³ 초과 허가
허가일자	2008.5.26	2008.5.26	2010.3.15	2015.12.17	

【표 2】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초과 취수량

(단위 : m³)

부과년월		최대취수량 (환경영향평가 협의)	실제 취수량	협의기 준초과 취수량	지하수관정 (4개소)			
					2008-0	2008-0	2010-0	2015-0
					○○리 산00-0 (0호공)	○○리 산0-0 (0호공)	○○리 산00-0 (0호공)	○○리 산0-0 (0호공)
총계		1,825,000m³/4년	641,695	222,459	167,100	252,136	170,838	51,621
2013	소계	360,000m³/년	173,776	60,430	48,185	65,161	60,430	
	1	30,000m³/월	9,653	3,264	2,692	3,697	3,264	
	2	30,000m³/월	11,817	3,239	4,748	3,830	3,239	
	3	30,000m³/월	11,887	3,987	3,151	4,749	3,987	
	4	30,000m³/월	8,007	3,807	2,801	1,399	3,807	
	5	30,000m³/월	19,320	6,671	1,876	10,773	6,671	
	6	30,000m³/월	20,696	8,874	3,543	8,279	8,874	

	7	30,000m³/월	17,686	7,666	3,855	6,165	7,666	
	8	30,000m³/월	15,035	5,153	4,351	5,531	5,153	
	9	30,000m³/월	7,928	-	3,229	4,699	-	
	10	30,000m³/월	16,086	5,010	4,774	6,302	5,010	
	11	30,000m³/월	15,395	4,835	8,122	2,438	4,835	
	12	30,000m³/월	20,266	7,924	5,043	7,299	7,924	
2014	소계	360,000m³/년	156,185	28,785	66,945	60,455	28,785	
	1	30,000m³/월	13,482	2,160	6,191	5,131	2,160	
	2	30,000m³/월	19,467	5,849	6,797	6,821	5,849	
	3	30,000m³/월	11,540	2,841	6,006	2,693	2,841	
	4	30,000m³/월	12,070	2,959	2,613	6,498	2,959	
	5	30,000m³/월	15,407	5,268	6,025	4,114	5,268	
	6	30,000m³/월	13,373	4,628	4,448	4,297	4,628	
	7	30,000m³/월	14,897	5,080	4,822	4,995	5,080	
2015	소계	360,000m³/년	147,128	56,713	26,952	63,463	56,713	
	1	30,000m³/월	13,499	5,706	2,502	5,291	5,706	
	2	30,000m³/월	11,257	6,538	-	4,719	6,538	
	3	30,000m³/월	11,814	6,794	-	5,020	6,794	
	4	30,000m³/월	12,617	5,021	3,212	4,384	5,021	
	5	30,000m³/월	11,681	4,939	2,554	4,188	4,939	
	6	30,000m³/월	15,541	6,850	3,295	5,396	6,850	
	7	30,000m³/월	18,571	7,238	3,565	7,768	7,238	
	8	30,000m³/월	8,848	5,990	-	2,858	5,990	
	9	30,000m³/월	12,828	5,177	2,471	5,180	5,177	
	10	30,000m³/월	10,648	2,460	2,997	5,191	2,460	
2016	소계	360,000m³/년	164,606	76,531	25,018	63,057	24,910	51,621
	1	30,000m³/월	12,125	3,179	2,734	6,212	-	3,179
	2	30,000m³/월	14,307	5,419	2,495	6,393	102	5,317
	3	30,000m³/월	12,852	6,836	1,100	4,916	1,479	5,357
	4	30,000m³/월	17,885	12,322	1,654	3,909	5,707	6,615
	5	30,000m³/월	19,591	12,153	1,788	5,650	5,249	6,904
	6	30,000m³/월	16,890	10,491	-	6,399	4,478	6,013
	7	30,000m³/월	12,858	5,956	2,094	4,808	1,913	4,043
	8	30,000m³/월	15,668	7,734	755	7,179	619	7,115
	9	30,000m³/월	13,374	7,000	3,031	3,343	1,789	5,211
	10	30,000m³/월	9,501	2,918	3,097	3,486	1,689	1,229
	11	30,000m³/월	9,645	2,523	3,176	3,946	1,885	638

※ 기장군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부적정”과 관

런하여 지방○○○○ ○○○는 담당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기장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시 관련부서 협업 및 업무담당자 인수·인계 등을 철저히 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시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준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